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9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고민정・박정현・이훈기

추미애 • 조인철 • 김동아

문정복 • 김준혁 • 장철민

김태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'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'를 공포하였는데,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교육부장관·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 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 임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·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(제1항에 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)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초학력진단검사) ① (생	제7조(기초학력진단검사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교육부장관・교육감 및 학
	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
	결과를 외부에 공개(제1항에
	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
	지는 제외한다)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